

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8. 9. 11. 제천시장
- 회 부 일 : 2008. 9. 12.
- 상 정 일 : 2008. 9. 17.(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생활환경팀장 김동석)

가. 제안이유

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2004. 12. 31일 제정·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(안 제5조)
-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(안 제6조 내지 제7조)
-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예외(안 제8조 내지 제9조)
- 친환경구매촉진을 위한 교육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석영)

[법적검토]

- 본 조례안은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서 자치단체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이 사항은 없음.

※ 사전절차 이행

- 입법예고 : 2008. 8. 9 ~ 8. 28(20일간)
- 조례규칙심의회 : 2008. 9. 10.

[행정적검토]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친환경상품 및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
-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촉진 등을 위한 시책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의무의 범위를 지정하였고
- 친환경상품 구매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

○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

○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참고자료

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

[단위 : 원]

년도 별	총구매계획(A)		실적(B)		비율(% , B/A)	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2006	48,537	1,115,612	44,718	796,038	92.1	71.4	
2007	47,130	566,238	45,308	541,259	96.1	95.6	
2008	55,468	1,496,775					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친환경상품의 종류와 관내 제조 판매회사 현황은?(권건중 위원)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 배경은?(김병룡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>

- 공공기관내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세탁기, 냉장고, 사무용품 등이 있으며, 관내 제조와 판매회사 현황은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음.
- 관련 법률은 2004년도에 제정 공포되었고, 우리시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시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하고, 체계적인 계획과 실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부. 끝.